#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01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 김 윤 • 이재정 • 김우영

강득구 · 남인순 · 강준현

소병훈 • 박상혁 • 이용우

김남근 • 박용갑 • 백혜련

전진숙 · 최민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6조·제4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총리 및"을 "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부총리의"를 "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인구전략기획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조정·평가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전략기획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의 행위 또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장

관,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공무원 또는 인구전략기획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임하는 <u>부총리 및</u> 제26조제1항	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장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	제19조(부총리) ①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u>3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과</u>	③ <u>기획재정부장관,</u>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교육부장관 및 인구전략기획부
	<u> 장관</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u>부총리의</u>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9. (생략)

<신 설>

② · ③ (생 략)

<u><신 설></u>

<u>부총리, 인구전략</u>
기획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의
_ <del>_'</del>
제26조(행정각부) ①
1. ~ 19. (현행과 같음)
20. 인구전략기획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
기획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조정·평가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